

대회 사용구 공인 규정

대회사용구 공인규정

제1조(공인) 대회사용 공인구를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업자는 본 규정에 따라 공인제조 판매업자로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적용 및 의무)

1. 본 규정은 본 협회가 주최하는 전국대회에서 사용되는 대회사용 공인구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본 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전국대회에는 반드시 본 규정에서 승인한 대회사용 공인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한다.

제3조(공인의 신청)

1. 공인신청조건

공인제조판매업자로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취급하는 제품이 제5조(제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나. 위탁 생산의 경우 공인구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다. 해외 공장으로부터 위탁 생산할 경우, 수입 후 15일 이내에 세관 직인이 날인된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신청절차 : 전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즉시 공문으로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가. 공인신청공문

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다. 공장등록증 사본(위탁 생산의 경우 제외)

라. 공의 상세 제조공정(사진 및 설명 첨부)

마. 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의 명세(원산지 포함) 및 단가

바. 모델별 협회 납품 가격표

<위탁 생산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가. 위탁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원
- 나. 위탁 또는 납품 계약서 사본
- 다. 위탁 회사의 전년도 생산 실적
- 라. 위탁 회사의 공장등록증 사본
- 마. 위탁 회사의 공장책임자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제4조(인정의 기준) 협회는 제3조에 따라 신청된 공이 제5조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신청자를 공인제조판매업자로서 승인할 수 있다.

제5조(제조기준)

-야구-

1. 신청한 공의 반발력이 반발측정기구에 의한 검사결과 그 평균반발계수가 0.4134에서 0.4374이내이어야 한다.
2. 공의 고무심은 규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의 실목폭은 16분의 6인치, 실밥수는 108이어야 한다.
4. 공의 주위는 9인치에서 9인치와 4분의 1이어야 한다.
5. 공의 중량은 141.7그램(g)에서 148.8그램(g)이내 이어야 한다.
6. 전기 각호에 규정한 사항 이외는 야구규칙의 일반규칙을 적용한다.
7. 공인구의 양모 함유량은 고교·대학 100%, 초등·중학·동호인은 70%(생산 과정 중 5% 이내의 오차 범위 인정)로 한다.

-소프트볼-

경식구

1. 공의 둘레는 30.5cm(12inch)이며, 0.3cm의 오차는 허용한다.
2. 공의 중량은 178g에서 198.4g이내여야 한다.
3. 공의 색상은 흰색 또는 노란 형광색이어야 한다.
4. 실밥의 색상은 흰색 또는 빨간색이어야 하며, 실밥 수는 최소 88개 이상이고 2열로 박음질되어 있어야 한다.
5. 공을 0.64cm 압축할 때 요구되는 하중이 170.1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경식구의 반발계수 및 연식구 제조기준은 추후 공인심사위원회에서 제정

제6조(수시검사) 협회는 제5조(제조기준)에 의거 공인구에 대한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수시 검사는 최초 공인 신청 시 제출한 샘플을 기준으로 하며, 협회 공식 전국대회에 납품된 대회사용 공인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샘플 채취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검사 비용은 협회가 부담하나, 문제 발견 시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비용은 공인제조판매업자가 부담한다.

제7조(공인제조판매업자의 의무)

1. 공인제조판매업자는 1년마다 협회가 정한 기한 내에 공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인제조판매업자는 협회로부터 공인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본 협회가 정하는 공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공인제조판매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인제조판매업자는 제품의 하자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공인제조판매업자는 본 협회의 제조공정 및 공인구에 대한 수시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제재)

1. 본 협회는 공인제조판매업자가 신청한 대회사용구가 상기 제5조의 제조기준 및 제7조의 의무를 고의로 위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인을 취소한다.
2. 공인제조판매업자가 의도적으로 제조를 중지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공인을 승인 받았을 경우, 공인을 취소한다.
3. 제6조에서 정한 수시 검사의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협회는 공인심사위원회를 통해 다음 각 호에 의거, 제재를 결정하여 해당 공인 제조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 공인 신청시 규정 위반의 경우

① 1차 적발 시 : 재시험 의뢰

② 재시험 의뢰 결과, 불합격 시 : 당해 연도 공인 신청 자격 박탈

2) 시준 중 수시 검사 결과 규정 위반의 경우

① 1차 적발 시 : 제재금 1천만원

② 2차 적발 시 : 공인 취소

4. 해당 공인제조판매업자는 공인심사위원회의 제재 결정(제재 및 벌금 부과)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5. 포장 상태 불량, 협회가 요구하는 표시 의무(원산지, 제조일자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는 않는다.)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 제재한다.

6. 기타 부정한 방법(협회 임·직원 결탁 및 금품 제공 등)으로 공인 승인 절차를 진행 또는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공인 제조 판매업자의 공인을 즉시 취소하고 상기 4항의 제재를 받는다.

7. 공인을 취소당한 공인제조판매업자는 공인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인심사위원회 제재 결과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시점부터 1년 이상 5년 이내에 본 협회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제9조(이의 신청) 공인심사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대하여 해당 공인제조판매업자는 제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공인의 효력기간) 공인의 효력 기간은 본 협회의 공인 승인 통보를 받은 당해 연도로 한다.

제11조(시행시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정 : 2004년 12월 9일 제3차 이사회
- 개정 : 2016년 2월 17일 제3차 이사회
- 개정 : 2017년 11월 28일 제3차 이사회